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완동해지역본부(완동해전략기획단, 해양수산국) 종합감사 —

2025. 11.



■ 처분요구일람표

1.	용역 감독 및 검사 공무원 겸직 부적정(주의)	1
2.	***** 운영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정산 등 부적정(시정)	3
3.	지방보조사업 관리 소홀(시정)	8
4.	위탁사업비 정산 부적정(시정)	12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감독 및 검사 공무원 겸직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지역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 *****에서는 동해안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용역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①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②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③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④제56조 제1항 제1호1)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⑤제64조 제6항2)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6조의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의 검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기성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따라서, *****에서는 용역 완료 검사시 감독공무원이 아닌 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용역 완료(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 **** *****’ 완료 검사시 감독공무원이 검사를 겸직하여 실시하여 용역 완료(준공) 처리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표] 용역 감독 및 검사 겸직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일자	준공(완료) 검사 일자	계약 금액	계약자	감독공무원	검사공무원	겸직	비고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운영비 지원 지방보조금 집행·정산 등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지역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환동해지역본부 *****에서는 도내 수산업경영인 및 어민 상호간 협력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수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1. 보조비목·세목 편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2023.1.2. 시행)」(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관리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보조비목 및 세목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적정 비목이 아니거나,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부신청 및 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표1] 0000년 ***** 운영비 지원 사업계획서 비목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비목	사업내용	사업비	적정비목 및 세목		비고
				비목	세목	
				업무추진비	사책업무추진비	보탬e에는 일괄민간 경상사업 보조편성
				인건비	보수	
				연금부담금등	보험료부담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사책업무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에서는 0000~0000년까지 사업계획서의 예산비목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따르지 않고, 예산비목별 산출근거도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보탬e(2023년 시행)에도 집행목적,

내용 등과 상관없이 일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후 지출되었음에도 별다른 시정명령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2.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관리기준」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훈령 제11조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1조 제5항 각 호³⁾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집행품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훈령 제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인 예산집행품의 후 집행을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에서는 보조사업자가 ***** 운영비 지원사업을 지출 결의서만 작성한 채 모든 예산 집행건에 대해 품의를 생략하고 지출행위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시정명령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3. 지방보조금 정산 부적정

「지방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3)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등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금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4대 보험료⁴⁾의 근로자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당초 교부결정내용과 무관하게 주류 등에 집행한 경우 정산 시 불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표2] 0000~0000년 ***** 운영비 지원사업 근로자 4대 보험료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도	구분	고지금액			실제납부재원			부적정 지급액 (A-B)	비고
		계	기관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 (A)	계	보조금	근로자 (B)		
(Blank area for data entry)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4)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관리 소홀
소 관 청 환동해지역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환동해지역본부 *****에서는 해양산업의 육성 강화를 위해 [표]와 같이 보조사업을 지원하였다.

[표]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 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연도	사 업 비 (천원)			교부일
			계	도비	자부담	
(Blank area for data)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금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부 조건을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등에는 2개월 이내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하여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받고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에서는 ‘***** ** **’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자부담금이 포함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전용통장에 자부담금이 예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 여부 및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구분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사업을 추진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의 통장예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0000.0.0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의

우선 집행 및 지방보조금과의 구분 집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0000.0.00.에 정산을 완료하여 지방보조사업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

2.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와 그 종물, 항공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며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제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그 현재액과 증감액을 명백히 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매년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을 공시할 뿐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중요재산 현황 및 부기등기 내역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정 요구하지 않은 채 정산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0000. 00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공시에 누락되고 부기등기 의무도 이행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 및 부기 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탁사업비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환동해지역본부
관 계 부 서 *****
내 용

환동해지역본부 *****에서는 [표1]과 같이 저출산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촌마을의 숙박시설을 활용한 임신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위탁사업 현황

위탁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대행사무의 목적, 위탁·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위탁·대행기간,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수탁·대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0000.0.00.자로 (*)*****을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공공기관의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을 통보하였으며,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뿐

아니라 사업 종료 시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에서는 ‘***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 위의 기준을 적용한 ‘제7조 본사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은 실제 사업비 집행금액의 8%로 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한다’고 명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 **** **’ 사업의 종료로 정산을 할 때의 위탁수수료 징수액은 총사업비 기준이 아닌 실제 투입된 사업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2]와 같이 위탁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 ‘(*)*****’에서 0000.0.0.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 기준 위탁수수료 00,000천원을 적용하지 않고, 총사업비 기준 위탁수수료 00,000천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0,000천원의 위탁수수료가 과지급된 사실이 있다.

[표2] 위탁사업비 정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항목	예산액	실집행액	당초 위탁수수료 (A)	정당 위탁수수료 (B)	차액 (미반납액) (C=A-B)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지급된 위탁수수료 0,000,000원을 회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시정)